금융행정 쇄신 방안

2026. 11.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감 독 원

목 차

Ⅰ. 추진배경 ····· 1

Ⅱ. 금융행정 쇄신 TF 운영 경과 ····· 2

Ⅲ. 금융행정 쇄신방안 ····· 3

1. 사후적발식 → 사전예방적 검사·제재 전환 ····· 4

2. 검사·제재 과정 민주적 통제 강화 ····· 8

3.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, 공정성·투명성 제고 ····· 13

Ⅳ. 향후계획 ····· 17

Ⅰ. 추진배경

□ **통합금융감독기구** 출범 이후 **금융회사 검사, 제재, 인·허가** 전반의 **금융행정 쇄신**을 위해 **다각적 노력**을 **지속 추진**

○ **금융회사 경영**에 **사사건건 개입**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**사전예방적, 원칙중심의 감독**으로의 **전환**을 **도모**

- ('04.10, '05.1.) **개별회사 전담 검사체제**(RM) 전환 등 상시감시 강화
- ('07.10.) **원칙중심 감독**으로의 전환 등 금융감독 **선진화 로드맵** 마련
- ('11.9.) **상시모니터링·검사종합관리시스템** 구축, **권익보호 담당역** 신설
- ('14.9.~12.) **직원 제재 원칙적 폐지**, **고의·중과실** 없는 **대출 면책**
- ('15.4.) **건전성-준법성검사** 구분, **검사처리기간 단축**, **권익보호기준 제정**
- ('19.8.) **인허가 접수거부 금지, 검사 표준처리기간 도입, 제재심 안건 열람기간 확대**
- ('22.1, 11) **정기·수시검사**로 개편, 사전통지 시부터 **제재심 안건 열람**

□ 이러한 노력에도 **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** 등 **국민 눈높이**에 부합하지 못해 **공공성·투명성 강화 요구 지속**

○ **사후적발식 검사 행태**가 **지속**되고, **사회적 이슈 사안**에 대한 **중간 검사결과 발표**로 **정치중립, 비밀유지 위반 논란** 발생

○ 이에 **정부조직 개편**시 **금감원**에 대한 **민주적 통제 강화**를 위해 **공운법상 공공기관**으로 **지정**하는 **방안**을 **검토**

- **공운위**는 **지정유보**하는 대신 **금융감독 쇄신**을 **조건**으로 **부과**

- ('25.9.7. 정부조직 개편방안) 금감원·금소원 **공공기관 지정 방안 발표**
- ('25.9.25. 정부조직 개편 수정 고위당정대) 별도 법률 개정 없이 금융감독체계상 소비자보호 기능의 **공공성·투명성 제고방안 우선 추진 논의**
- ('26.1.29. 공운위) 기타공공기관 이상 **경영관리 강화**, **금융감독 전반 쇄신**, **금융소비자 보호** 조건 전제 **지정유보**

□ **금융행정·감독 전반**의 **구조적인 쇄신**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**금융회사**의 **보수적인 업무 관행**을 바꾸기에는 **한계**

○ **금융회사**의 **자율성, 경쟁력** 강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**생산적 금융**, **포용금융**으로의 **성공적인 금융 대전환**도 **어려움**

⇨ **금융행정·감독 전반**의 **공공성·투명성 제고**를 위해 **외부**의 시각에서 **금융행정 프로세스**를 **전면 재검토**

Ⅱ. 금융행정 쇄신 TF 운영 경과

◈ 전문가, 업계, 일반 국민 등 **외부의 시각**에서 **다양하고 가감 없는 의견 청취**

□ **검사·제재·인허가** 등 **금융행정**의 **공공성·투명성 제고**를 위해 **금융위·원** 및 **학계·법조계** 등 **전문가** TF 운영('26.3~11월)

○ (**1차 : 킥오프**) 금융행정 쇄신 TF **운영방안** 및 주요 논의주제

○ (**2차 : 수요자 중심 검사**) **사전 컨설팅검사 도입**, 긴급검사 사유 구체화, 자료제출 요구절차 개선 등 **수요자 부담완화 노력**

○ (**3차 : 검사 투명성·예측가능성 제고**) **중간 검사결과 공표 원칙적 금지**, 검사과정의 **내·외부통제 강화**방안 등

○ (**4차 : 제재 자율시정 활성화**) 감경한도·사유 개선 및 **시정조치 유형 확대**, **제재면책** 등을 통한 **자율시정·시정조치 활성화**

○ (**5차 : 제재 투명성·예측가능성 제고**) **제재양정기준 투명성 제고**, **제재종결 관련 방어권 강화**, 수요자 중심 제재결과 공시 등

○ (**6차 : 제재 역량강화**) **제재심의위원회 개선방안**, 검사·제재 사건기록·증거관리 강화, **안건소위 기능강화·보완수단 마련** 등

○ (**7차 : 인허가 절차개선**) 인허가 **디지털시스템 구축**, 적극적 종결처리 및 중단제도 개선 등 **인허가 종결절차 합리화** 등

○ (**8~9차 : 금융행정 쇄신방안**) **최종안** 검토 및 **랩업**(wrap up)

□ **수검기관 간담회** 및 **금융협회**와 **금융위·금감원 홈페이지** 등을 통해 **익명사서함**을 **운영**하여 **업권, 국민 의견 청취**

○ **금융업권**(은행·보험·증권 등)의 검사·제재·인허가 관련 **애로사항**을 **직접 듣고, 익명사서함**을 통해 **총 75건** 의견 청취('26.3~11월)

Ⅲ. 금융행정 쇄신방안

◈ 금융행정의 공공성·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확보를 위해 "검사·제재·인허가 등 금융행정 전반의 쇄신방향" 마련

❶ 사후적발식 검사·제재에서 사전예방적 검사·제재로 전환합니다.



1 정기검사의 사전예방적 검사 기능 규정화	정기검사의 정의 개정, 검사범위 구체화, 주기설정, 컨설팅 기능강화
2 제재의 자율시정 기능 강화	경미한 위반 행위 면제, 자율시정 시 감경, 여신업무 면책, 시정조치 활성화
3 제반여건 정비	검사원 유인구조 개선(KPI, 면책 등), 컨설팅 유형 조치비중 관리, 법적근거 마련 등

❷ 검사·제재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.



1 검사 업무의 책임성 제고	중간검사 공개 금지, 금융거래정보 열람 내부통제 강화, 검사권익심의회 신설 등
2 제재 심의기능 내실화	금감원 제재심 전문성 강화, 금융위-금감원 공조시스템 강화, 안건소위 전문성 강화
3 제재 공정성·합리성 제고	제재 양정기준 정비, 제재효과 조정, 수사기관 고발·통보 정비, 직권재심 내실화

❸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공정성·투명성을 제고합니다.



1 검사과정상 수검대상 권익보호	사전통지 개선, 검사·처리기간 지연 방지, 무분별한 자료요구 제한, 기피·반론권 보장 등
2 제재 업무의 투명성·예측가능성 강화	제재심 안건열람·통지 정비, 공시 개선
3 인허가 업무 효율성·신속성 제고	인허가심사중단제 개선, 심사종결제 도입, 스몰라이센스 규제 정비
4 업무 디지털화	검사·제재 및 인허가 업무 全과정 디지털화

1 사후적발식 검사·제재에서 사전예방적 검사·제재로 전환

가. 현황 및 문제점

□ (현황) 사전예방적 검사·제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

○ (검사) 상시감시를 지속 확대하고, 현장검사는 "종합검사" 폐지 후 "정기-수시검사" 체계로 개편('22년 규정개정)

- 정기검사는 ❶경영실태평가 + ❷핵심·취약부문 검사를 조합

< 그간의 주요 추진 경과 >

- ('04.10. 금감원 변화·혁신) **조기경보시스템 정비**, **기관별 팀**(Relationship Manager) 중심 **상시감시 강화 기반 구축**, **상시감시** 기반 **사전예방적 검사 전환**
- ('07.10.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) **원칙중심의 감독**으로 패러다임 전환
- ('08.5 금감원 Quick-Win 과제) **경영컨설팅 활성화**를 위해 **부문검사 면제**
- ('11.9. 금융감독혁신방안) 저축은행 **상시모니터링 시스템** 구축
- ('14.9. 검사·제재혁신) **관행적 검사축소**, **사전예방금융감독시스템(FREIS)** 활용
- ('15.2. 금융감독쇄신) **관행적 종합검사 점진적 축소·폐지**, **문제 중심 선별검사**
- ('15.4. 검사·제재개혁) **건전성-준법성 검사 구분**, **FREIS 보완**, **금감원 조직개편**
- ('22.1. 검사·제재혁신) **정기-수시검사 체계 개편**, **정보교류·상시감시 강화**

○ (제재) 다양한 제재대체적 조치·면제 및 감경사유 등 마련

< 제재 대체적 조치 등 유형 >

① (현지조치) 경미한 위법·부당행위 **검사현장에서 조치**(검사반장), 세부절차 및 유형은 **금감원 내부 기준**(검사품질관리매뉴얼)에 따라 운영중

② (확약서·양해각서) **기관제재** 중 "**기관주의**" 사유는 **확약서**, "**기관경고 이하**" 사유는 **양해각서**로 대체 가능(금감원장)

③ (신분제재) 임직원 행위가 "**주의**" 사유에 해당시 **준법교육 이수를 조건**으로 조치 면제 가능(90일내 미이수시 효력 상실), 사후수습, 자진신고 등 고려 **감경·면제 가능**

④ (과태료) 사소한 부주의·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금융기관·거래자에게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**견책·주의 또는 시정조치** 등 갈음 가능, 자진신고, 자진시정, 예방조치 등 **자체감사 노력 시 50% 감경 가능**

□ (문제점)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정기검사가 저인망식 종합검사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고, 검사 주기도 불규칙적

○ 이에 따라 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적발에 치중하게 되는 구조

나. 개선방안

1 정기검사의 사전예방적 기능 규정화 (검사제재규정 개정)

❶ (정의) "경영실태평가 + 핵심·취약부문" 검사임을 명시*

* 현재는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만 규정(검사제재규정§3iii)

-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금지

❷ (범위설정) 준법검사·제재가 주로 이뤄지는 핵심·취약부문*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정·통지

* (핵심)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검사시 항상 확인해야 하는 부문 사전지정
(취약) 업권별, 회사별, 시기별 취약요인을 상시감시 결과에 따라 선정

- 단, 검사 중 추가 위규 의심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적정한 절차*를 거쳐 검사범위 확대

* 예) 전결권자 상향(2회 이상 확대시 부원장보 전결, 3회 이상시 신설되는 검사권익보호심의회 심의 등), 검사범위 확대 사유 등 시스템 등록

❸ (주기) 연초 검사계획 마련 시 업권별 주기를 통지하고, 이후 변경되는 경우 검사계획 수립·통지 시 안내*

* 검사주기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대형 금융회사부터 도입

❹ (컨설팅 기능 강화) 사전예방적 컨설팅 기능을 확대·구체화

- 경영진·이사회 등 면담시 필수 설명사항에 경영·영업상 특징, 우수·미흡사례 공유, 내부통제 점검 결과 등 컨설팅 항목 추가

-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 및 신규 진입 금융회사*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 사전컨설팅을 우선실시**하고, 신규회사의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우선 부과

* 내부통제 체계가 일정 수준 이상 정비되어 있는 업권 등
** 검사계획 마련 시 주요제도 및 신규진입 금융회사에 대한 컨설팅 계획 반영

< 검사체계 개편 주요내용 >

현행 규정		개선	
정기	금융기관 규모, 시장영향력 등 감안 **일정 주기**로 **정기적** 실시(**1개월전** 통지)	정기	**"경영실태평가+핵심·취약부문 검사"**를 금융기관 규모, 시장영향력 등 감안, **일정 주기**로 **정기적** 실시(**1개월전** 통지)
수시	금융사고예방, 금융질서 확립 등 감독상 필요로 **수시 실시**(**1주일전** 통지) 현안 등 사유로 **통지생략** 가능 (소위 **긴급검사**)	수시	금융사고예방, 금융질서 확립 등 감독상 필요로 **수시 실시**(**7영업일전** 통지) **금융사고, 재무건전성 악화** 등 사유로 **통지생략** 가능(p.14)

2 제재의 자율시정 기능 확대 (검사제재규정 개정)

❶ 경미한 위반행위는 제재를 면제하고 대체적 조치 활성화

- (**현지조치**) 현재 **금감원 매뉴얼**에 규정된 **현지조치 요건**을 **검사·제재규정**에 **명시·구체화***하여 **조치 부담 완화**

* 예) 금융회사 내부감사를 통해 이미 자체 시정된 경미한 위반 사항 등

- (**신분제재**) **준법교육 이수 조건부 조치 면제** 대상을 "주의"에서 "**주의적 경고**"까지 **확대**

- (**과태료**) **면제 사유**를 **구체화***하고, **제재 대체적 조치**(확약서 징구, 양해각서 체결 등)로도 **갈음 가능**하도록 명시

* 예) 검사·제재규정상 위반동기 '하', 위반결과 '경미'로 판단되고 가중사유 미해당

❷ 자율시정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제재 감경·면제 확대*

* 필요시 감독기관 인지 후 자진시정 노력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- (**과태료**) **과태료 감경 상한 확대**(예: 50→75~100%) 또는 **감경 사유 2개 이상** 해당 시 **감경 중복 적용**

- (**기관·신분제재**) **원상회복 정도, 치유의지** 및 **재발방지 노력** 등을 평가하여 감면 가능하도록 **구체적 운영기준 마련**

❸ 여신업무에 대한 면책* 활성화

* 현행 검사제재규정상 위법, 고의·중과실, 청탁이 없는 대출은 모두 면책

- **생산적·포용금융** 등 **주요 정책**에 대해서는 **면책사항**을 발굴하여 **면책위, 공문발송** 등 **적극 추진**

- 고의·중과실 **처리기준 구체화·명확화** 및 **이의신청 절차 구체화**

❹ 처벌 위주의 제재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 활성화

- **금융관련법령상 위반행위 시정·중지명령, 조치사실 공표, 게시명령** 등에 대한 **구체적 심사기준 마련**

< 시정조치 부과기준 예시 >

① **(위법·부당행위 중지명령)** 정당한 사유없이 위법·부당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, 직접적위반행위 또는 가까운 장래에 반복 우려가 있는 동일·유사행위 재발을 금지할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 등

② **(부당이득 환급, 배상명령)** 금융회사가 위법·부당행위로 수취한 부당이득을 환급하지 않거나, 위법·부당행위로 소비자가 재산상 피해 등을 입은 경우, 임직원 등의 위법·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액 등에 대한 추징·회수·보전 등을 통해 원상회복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

③ **(공표명령)** 위법의 효과·피해가 명백히 계속되는 경우로서 ❶피해자가 불특정 다수, ❷피해자 구제 필요, ❸허위·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 치유 등을 위한 경우

④ **(개선, 피해구제 명령)** 전산사고 등 피해복구 및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있는 경우

3 사전예방적 검사·제재 전환을 위한 제반여건 정비 (금융위설치법 개정 등)

❶ (검사) 검사현장에 착근되도록 검사원 유인구조 등 개선

- 검사절차 등 **업무처리의 적정성** 등을 **검사원 KPI**에 **반영**
- **합리적인 절차, 판단기준**에 따라 **예방·개선 중심**으로 **검사 수행 시 사고가 발생**하더라도 **금감원 검사원 면책***

* 예) 감사원 협의 및 법개정을 통해 금감원 임직원의 행정·민사상 면책 근거 마련

- **자료삭제·변조 방지**를 위한 **봉인 요구 조치**의 **법적 근거 명확화**
- **검사방해** 관련 **행정제재 기준**의 **권역별 일치** 및 **중대한 검사** 방해에 대한 **형사처벌 조항 신설** 검토

❷ (제재) 조치 유형 비중 관리 및 대체적 조치 실효성 확보

- **컨설팅 유형 조치**(개선, 경영유의, 현지조치 등) **비중*** **지속 관리**

* 최근 3년간 컨설팅 유형 조치 비중 75.3%

- **현지조치, 확약서, 양해각서** 등으로 **조치를 취한 사항**에 대해 미이행 또는 **동일한 위반행위 적발** 시 **제재 가중사유**로 명시

❸ (법적 근거)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

- 검사제재규정의 **위임근거** 및 **제재 대체적 조치** 및 **위반시 효과, 여신업무 면책** 등에 대한 **법적 근거 마련**

2 검사·제재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

가. 현황 및 문제점

□ (현황) 검사·제재가 수검대상 권익에 미치는 영향 지속 확대

○ (검사) 검사과정상 관련 정보공개 및 자료열람 증가 추세

- 검사·조사·감리 및 제재가 진행중인 사안을 금감원 내부 업무매뉴얼상 요건* 해당시 공보할 수 있도록 운영

* 금융소비자 피해 확대 및 리스크 확산 방지, 금융시장 안정 우려, 오보 정정, 언론에 이미 공개된 경우,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

- 실명법상 영장 없이 가능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건수도 지속 증가

<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(검사관련) 요구 현황 >

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요구 건수	**23,353**	**10,545**	**17,993**	**32,601**	**32,097**	**28,173**
검사관련	**6,417**	**3,450**	**10,781**	**12,018**	**14,560**	**15,140**
조사관련	16,936	7,095	7,212	20,583	17,537	13,033

○ (제재) 대형 금융사고, 내부통제 위반 등 사회적 관심이 높고 사실·법률관계가 복잡한 제재 확대

- 향후 제재·과징금 규모 증가에 따라 제재의 파급효과 확대 및 소송 증가 예상

□ (문제점) 수검 대상의 권익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적절한 통제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

○ 검사 과정상 권익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심의·구제절차가 부재

○ 제재 심의를 뒷받침할 증거검증 체계, 기관간 자료 공유, 조직 역량은 확대된 업무를 내실 있는 수행하기에 한계

- 제재 양정기준, 제재효과 등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다양한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움

나. 개선방안

1 검사 업무의 책임성 제고 (공보준칙 마련 및 검사제재규정 등 개정)

❶ (검사내용 공표) 중간 검사 결과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*

* 수사기관은 공보에 관한 규정(법무부, 경찰청, 공수처 등)을 통해 공개금지 원칙, 예외공개기준 등을 엄격히 규정 중

- **(예외사유) 소비자 보호, 오보 정정** 등에 **한정**하여 **규정**
- **(대체조치 우선) 소비자 피해** 등 우려 시에도 **소비자 경보, 금융회사 앞 유의사항 전파** 등 **조치 우선 추진**
- **(공개범위) 신원 유추 가능정보, 추후 제재**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등은 **제한**
- **(공개절차) 중간 검사결과 공개 필요** 시 **사전절차*** **강화**

* 금감원 내부협의 및 금융위 사전협의 등

❷ (금융거래정보 열람) 금융거래정보 열람 관련 **내부통제 강화**

- **(전결권 상향) 부서장**에서 **부원장보급**으로 상향 조정*

* 다만, ❶긴급한 경우 및 ❷계좌추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최초 금융거래정보 요구 후 부수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부서장 전결 후 사후보고

- **(사유 소명)** 검사관리시스템 등에 건별로 **계좌추적 사유**를 **구체적**으로 **입력***하고, 사유를 **확인**한 후 승인

* 현행 실명법상 "필요한 최소한의 범위(보충성의 원칙)" 이내로 규정된 만큼, 다른 대안으로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구체적 사유 소명

- **(사후관리) 금융거래정보 요구 권한 남용**을 막기 위해 **건수 및 사유** 등 **현황**을 **사후적**으로 **관리**

< 사후관리 절차 예시 >

- 동일 검사·조사의 **금융거래정보 요구건수**가 통상적인 수준 초과시(상위 10%) 전결권자에게 알람 발송
- 반기별로 **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** 감사실 점검 및 부원장 보고
- **매년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**을 **금융위**를 **통해 정기국회 보고**(현재 법상 수행중)

❸ (**검사권익보호심의회 신설**) 검사권의 **무분별한 확대 방지, 권리 침해 구제**를 위해 금감원 내 "**검사권익보호심의회**" 신설

- (**구성**) **검사부서 외**의 **금감원 내부위원**(감사실·법률자문관·권익보호관 등)과 **외부위원**(과반수 이상)으로 구성*

* 검사상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소위(내부위원) 논의 후 심의회 사후보고

- (**운영**) **권익 침해** 관련 **금융회사 이의제기·시정요청 사항** 및 **권익보호**를 위한 **다양한 절차적 사안***들을 **심의 또는 보고**

* 예) 검사기간·범위확대, 검사원 기피신청, 사전통지 생략현황, 변호사 비닉권 예외, 개인정보 예외적 요구 및 관련 이의제기

❹ (**검사결과 보고**) 제재 외에도 **건전성 관리 관점**에서 유관기관(한은, 예보 등) 공유가 필요한 사항* **정기적으로 금융위 보고**

* 예) 대형금융회사(SIFI) 등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보고 등

- 검사제재규정상 **검사종료** 후 **지체 없이 금융위 보고**하여야 하는 **사유*·절차 구체화**

* 예) 시스템 리스크 초래 및 금융기관 건전성 중대한 저해, 채무이행 능력에 중대한 영향 우려, 다수 소비자 피해 우려 및 신속한 판매제한 등

2 **제재 심의 기능 내실화** (검사제재규정, 세칙 등 개정 등)

1 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공정성·객관성 강화

○ (**구성 다양화**) **다양한 분야**의 **의견**을 **수렴**하여 **전문성 강화***

* 예) 민간위원을 전문분야별 Pool로 구분하고, 필요시 제재심 Pool 인원수를 확대하거나, 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 신설

○ (**이해상충 방지**) 일정 기간 내 이해상충 사유가 있는 자 위촉 제한, 안건별 **제재심 위원 명단**은 **심의 전 공개 금지**

2 금융위–금감원 업무 공조 시스템화

❶ 제재 全 과정 안건 양식 통일

- **내실화된 심의, 실무자 업무 경감**을 위해 **제재심-금융위 안건 양식 통일** 및 **안건 보완·검증**

- **요약본**을 **만드는 경우 이전 단계 심의자료 활용**

❷ 제재안건정보시스템 구축('차세대 금융위 정보시스템')

- 금융위 "안건관리시스템"과 금감원 "검사종합관리시스템"을 **고도화·연계**하고, 심의, 소송 등 **단계별 열람가능 자료 구분**

❸ **금융위·금감원 조치**가 **혼재된 사건**에 대해서는 **일관된 조치**를 위해 **사실·법률관계** 관련 **자료공유 내실화** 및 **금융위 확정 후 조치 재검토·통보**

- **동일 행위***에 **금융위 조치사항**이 **남아있는 경우 금융위 의결** 후 **금감원장 조치 통보**

* 예) 동일 검사·동일 위법행위에서 파생된 경우, 사실·법률관계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등 분리조치 시 처분의 일관성·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

-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**조치양정·사실관계**가 **변경**되는 경우 그 취지에 따라 **금감원장 조치**를 **재검토**하고, **금감원장 조치 변동사항**에 대해서는 **금융위**에 **송부***

* '23년 마련한 「금융위 수정의결시 금감원장 조치 재검토절차」에 따라 재검토 의무 등 규정화

❹ **금융위 법령해석** 등이 필요한 **중요 제재 사안** 등*에 대한 **금융위-금감원 사전협의 절차 강화**

* 예) 대규모 과징금 부과 건으로 첫 법령적용 등 법리적 쟁점이 첨예한 사안

- 금융회사 사전통지 전 금융위에 **법령 적용 여부, 법령해석** 등을 **질의**하고, **답변**받을 수 있는 **절차 명문화**

❺ **중장기적**으로 **심의 역량 집중방안 검토**(유사사례 예시 : 공정위와 같이 경미 제재는 소위에서 처리, 중대 제재는 금융위 의결 등)

3 금융위 안건소위 전문성 강화

○ **중대한 제재 사안*** 등에 대해 필요시 **금융위 안건소위 단계시 전문가 참여**

* 새로운 영역 또는 고난도 사건으로 피조치자 권익에도 영향이 큰 경우 등

- **주관위원**(금융위 위원)이 **자문이 필요**하다고 **판단한 사건**에 대해 **전문가 의견을 청취**하여 **안건 소위**의 **전문적·객관적 검토 기능 강화**

3 제재의 공정성·합리성 제고 (제재 TF 운영, 검사제재규정 개정 등)

❶ **(양정기준) 제재 양정기준 전반**에 대한 **개정 사항 발굴**

- **(과태료) 단순·경미 위반사항**에 대한 **개선기회 부여***, **위임 전결 규정 정비** 등 양정기준 정비

* 「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('23.3)」에 따라 검토하기로 한 과제 등 포함

- **(과징금)** 일률적으로 규정 중인 **부과기준**의 **개정** 및 **절차별 일관성·합리성***, **피조치자 예측가능성 제고방안** 등 검토

* 예) 금전제재 부과 건의시 부과기준상 부당이득, 재량감경 필요 여부 등 포함

- **(공통) 불확정적**이고 **추상적인 양정요소** 등에 대한 **판단기준** 및 **업권별·규모별 차등화된 기준** 등 **마련 검토**

❷ **(사후효과) 과도한 신규사업 진출** 및 **직업선택의 자유 제한**이 발생하는 **제재 효과**는 **합리적으로 조정**

- **유사사례**와의 **비교*** 등을 통해 **전반적 제재 효과** 등 **검토**

* (공무원법) 임용·승진 제한: 파면 5년, 해임 3년, 강등·정직 1.5년, 감봉 1년, 견책 6개월
(금융사지배구조법) 임원 결격: 해임권고·면직 5년, 직무정지·정직 4년, 문책경고·감봉 3년

** (형법) 판결선고전 구속되어 있던 기간(미결구금일수)은 나중에 선고된 형기에 포함

- 중장기적으로 **금융업과 직접 관련성**이 낮은 **타법령 위반**까지 **일률적으로 결격사유**로 **연계**하는 **규정**의 **타당성 검토**

❸ **(수사기관 고발·통보) 금융위 조치사항**은 **금융위 의결 후 고발·통보**(현행과 같이 특경법 위반은 지체없이, 공시·조사 관련은 증선위 의결 후)

- 단, **금감원 조치사항**, **증거인멸·도주우려** 등 **긴급**을 요하는 경우 등 **포괄적 예외 인정**

* 행정조치 권한이 나뉘어 있는 경우 금융위 의결후 일괄 고발·통보

- 타법 위반의 경우에도 **해당 타법 위반**이 **금융법 위반**의 **선결문제**에 **해당**하는 경우 **금융법과 동일한 절차 적용**

❹ **(직권재심) 행정소송 패소판결** 시 **동일한 법률 쟁점**이 있는 사건에 대한 **직권재심·취소 대상*** 및 **절차 구체화·명확화**

* 예) ❶해당 판결 관련 당사자 外 회사·임직원, ❷판결과 동일 유형의 쟁점 관련 처분을 받은 제3자

3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및 공정성·투명성 제고

가. 현황 및 문제점

□ **(현황)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상 수검대상 권익보호**를 위한 **원칙** 등을 규정중

○ **(검사) 사전통지, 표준검사 처리기간, 수검자 권익보호** 등에 대해 **검사제재규정** 및 **세칙상 규정**

- **(사전통지) 정기검사**(1개월전), **수시검사**(1주일전) **사전통지**가 필수적이나 **일부 예외사유 해당**시 생략 후 검사*

* (검사제재규정§8의2) 조작·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 예상, 시장 악영향 예상, 사전통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,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

- **(검사·처리기간) 정기검사**(180일), **수시검사**(152일)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, **예외사유*** 해당시 산입 제외

* 법률·회계 검토 기간, 의견청취 기간, 후속검사 소요기간, 수사기간 등

- **(임직원 권익보호기준) 세칙상 별표**(검사원 복무수칙)내 **별첨**으로 **자료요구 원칙** 등을 규정

○ **(제재)** 제재심 전후 **사전통지, 안건열람**(방문·필사 원칙), **결과통지**(구두안내) 등 규정, 제재종료후 관련 내용 **공시**

○ **(인허가)** 소송·조사·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**인허가 심사 중단**, 신청인의 **자료보완 지연** 시 **심사 적체 가능**

□ **(문제점) 금융행정**의 **예측가능성 저하**에 따른 **수검부담 증가**

○ **(검사) 다수 예외 규정**으로 **사전통지 생략, 검사·처리 지연, 무분별한 자료요구** 등 **금융회사 수검 준비기간 부족**

○ **(제재) 정보제공 부족, 인적 안내방식**에 따른 **방어권 보장 한계** 및 **비효율 발생**

○ **(인허가)** 소송, 조사 등 **일정 예측**이 어렵고, **심사 적체 가중**으로 **신청인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**

나. 개선방안

1 검사 과정상 수검대상 권익 보호 (검사제재규정 개정 등)

❶ (사전통지) 사전통지 생략 사유 제한 및 통지기간 확대

- 단순 점검을 위해 **사전통지를 생략**하지 않도록 **예외 구체화***

* 예) 긴급한 현안점검 및 기타 사유 삭제 → 금융사고, 재무건전성 악화 등 구체화

- 수시검사 **사전통지 기간 확대**(7일전→7영업일전)

❷ (검사·처리기간) 검사기간 연장 및 처리 지연 방지

- **(검사기간) 2회 연장**시 **전결자 상향**(부원장보), **3회 이상 연장**시 **권익보호심의회**(신설) **심의 + 연장시 사전 서면 통보**

- **(처리기간) 직전 동일 부문 검사 처리**가 **완료되지 않은 경우 검사 연기** 및 **검사 사후처리 업무부담 경감***

* 예) 단순 과태료 절차 간소화, 경미행위 면제확대, 선택·집중을 통한 검사계획 수립

❸ (자료요구 등) 무분별한 자료요구 및 영업시간 후 검사제한

- **(유사·중복자료) 2개 이상 검사반** 편성시 **요구서·징구자료 공유**, 금융회사 임직원의 **작성양식 통일 요청권 신설**

- **(디지털 자료) 디지털 자료징구시 키워드 검색, 당사자 입회** 등을 통해 **개인정보보호 강화**

- **(법률자문자료 등) 변호사법 개정**('27.2월 시행)에 따른 **변호사 비닉권*** **보장** 절차 마련

* 변호사에게 조력받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(변호사법§26의2)

- **(사전면담) 수시검사**도 **검사착수 전 담당자 사전면담*** **실시**

* 검사정보(목적, 선정이유, 중점검사사항 등) 사전공유를 통해 이해도 제고, 단, 결산점검 등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수시검사 및 긴급검사에 대해서는 생략

- **(영업시간 종료 후 검사) 임직원 권익보호기준** 상의 **예외**를 **명확히***하여 **영업시간 이후 자료제출·면담요청 방지**

* (현재)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→ (개선) 당사자의 요청, 사고발생 등

❹ (기피·반론권) 수검기관의 검사원 기피권 및 반론권 보장

- (기피권) 기피 신청에 대한 권리를 규정상 명시하고, 별도의 심의 기구에서 심의하는 절차적 투명성 확보

① **기피 신청 권리를 임직원 권익보호기준**에 명시

② **권익보호담당역**에게 기피 신청하고, **권익보호심의회(신설)**에서 기피 여부 심사

③ 이와 별도로 검사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**검사원 종합 연수, 신입직원 연수, 경력지원 연수** 등 교육 강화

- (반론권)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제기 절차에 대한 실효성 제고

① (**퇴직자 반론권**) 검사의견서 교부전-후 의견제출 가능 여부를 금융회사에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화, 관련 서식에 통지 확인절차 마련

- 금융회사가 통지하였으나 통지 거부·실패시 **금감원 직접 고지**, **퇴직자**의 **금융회사 자료열람 요청권** 등 **명시**

② (**부서장 의견청취**) 소명의견 청취를 요청할 권리와 요청 시 불이익 없음을 명시

❺ (검사대상기간) 검사대상기간(5년) 및 예외사유를 규정화

- 검사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여 장기간 경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·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운영

2 제재 업무의 투명성·예측가능성 강화 (검사제재규정 개정 등)

❶ (제재심 안건 열람) 현재 현장방문 및 필사만 가능한 제재심 안건 사본 사전 교부*

* 보안 우려 해결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안건 열람 검토

❷ (제재심 사전통지·결과통지) 제재심 통지 절차를 정비

- (사전통지) 제재심 이후 제재과정에서 제재 여부 또는 수준 등 최종 처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토록 명문화*

* 제재심 종료 후 금융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예정임을 함께 고지

- (결과통지) 부의 안건과 달라진 심의 결과는 신속히 안내(금감원), 제재건의예정서 접수후 공식 사전통지(금융위)

※ 확정 전 제재정보에 대해 당사자 외 비밀유지 의무(금융위설치법) 준수 필요

❸ (**제재결과 공시 개선**) 금감원 홈페이지 내 검사·제재에 관한 **공개 화면**을 개선하여 해당 화면에의 **이용자 접근성**을 높이고,

- **회사별** 제재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**통합 검색 기능**을 도입하여, 통합 **검색·조회 공유** 등이 용이하도록 **데이터 일괄 변환**

3 인허가 업무 효율성·신속성 제고 (인허가 TF 운영, 인허가매뉴얼 개정 등)

❶ (**인허가 심사중단제**) **무기한 방치**를 막기 위해 **"중단"**에서 **"재개" 원칙**으로 **변경**

- 과도한 심사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**심사중단 사유·범위 합리화***

* 예) 중단사유 확정시 발생하는 결격요건 기간 대비 심사중단 기간 과도하게 지속시 재개 적극 검토 등

- 금융회사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「**금융권 인허가·승인 심사 중단제도 운영 실무지침**」을 **인터넷 홈페이지** 등에 공개

❷ (**심사종결제**) **신청인측 사유**로 **자료 보완**이 **장기간 지연**되는 **경우 심사 종결**

① 형식적 또는 실체적 요건이 미비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**자료보완** 요구
② 기한 내 자료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감원은 금융위에 **종결처리 의견 송부**
③ 금융위 최종 판단을 거쳐 신청인에게 형식적 요건 미비는 '**반려**', 실체적 요건 미비는 '**불승인**'으로 종결 통보

❸ (**스몰라이센스**) **스몰라이센스** 사례별 **정비 필요 규제***를 살펴보고, **비례의 원칙**을 **고려**하여 **진입, 영업규제 합리화**

* 예) 과도한 적격성 요건 요구, 업무위수탁 제한, 과도한 의무이행 요구 등

4 금융행정 업무 전면 디지털화 (시스템 구축)

❶ (**검사·제재**) **검사원 업무 배분**부터 **검사결과 처리단계 자동 통지**까지 **검사관리시스템**을 통해 **처리**

❷ (**인허가**) 인허가 접수·심사 **全과정 전면 디지털화***, **진행상황 안내**

* 주요 인허가·등록 8종에 대해서는 旣 개발·시행('26.9.7일)

Ⅳ. 향후 계획

□ (제재 TF) 제재 양정기준 정비 및 제재효과 조정 관련 개정 필요사항을 발굴하고, 기타 검사·제재규정 개정사항 구체화

□ (인허가 TF) 인허가심사중단제, 스몰라이센스 규제 개선 관련 개선 필요사항 발굴 등

1. 사후적발식 검사·제재에서 사전예방적 검사·제재로 전환합니다.		
정기검사 규정개정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제재 자율시정 강화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KPI 개선	검사역 KPI 기준 마련	~'27년 1분기
검사원 면책	감사원 협의 및 설치법 개정안 마련	~'27년 2분기
컨설팅 유형 비중관리	금감원 내부 제재유형별 관리	즉시 시행
기타 법적 근거 마련	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마련	~'27년 2분기
2. 검사·제재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.		
중간검사결과 공개금지	공보 준칙 마련	~'27년 2분기
금융거래정보 열람제한	내부 전결 및 사후관리 절차마련	~'27년 2분기
검사권익보호심의회 신설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검사결과 보고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제재심 개선	세칙 개정	~'27년 2분기
금융위-금감원 공조강화	검사·제재규정 개정 등	~'27년 2분기
안건소위 전문성 강화	전문가 의견청취 방안 마련	~'27년 2분기
제재 양정기준 정비	제재 TF 운영·방안마련	~'27년 하반기
제재 효과 조정	제재 TF 운영·방안마련	~'27년 하반기
수사기관 고발·통보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직권재심 절차개선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3.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공정성·투명성을 제고합니다.		
사전통지 개선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검사·처리기간 개선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자료요구 관련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기피권·반론권 보장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제재심 안건 열람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제재심 통지 관련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제재 공시개선	홈페이지 개선	~'27년 4분기
인허가심사중단제 개선	인허가 TF 운영·방안마련	~'27년 3분기
심사종결제 도입	인허가매뉴얼 개정	~'27년 1분기
스몰라이센스 규제개선	인허가 TF 운영·방안마련	~'27년 3분기
업무 디지털화	시스템 구축	~'27년 3분기